

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보고

가. 제안일자 : 2001. 12. 6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12. 6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92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(2001. 12. 13) 계속 심사 보류
- 제9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2. 3. 1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식산업과장 조재형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선도산업 육성개발 및 중소·벤처기업 진흥육성을 위한 부천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함(안 제4조)
- 재단의 사업 수행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 - 산업기술단지 개발, 관리, 지원 및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
 - 인력, 자금, 기술, 마케팅, 교육지원 및 중소기업 국제협력 촉진
 -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, 관리 및 벤처창업 보육사업
 - 공적기능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시 및 중앙정부의 위탁사업
 - 벤처펀드 조성운영 및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
- 재단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-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 -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, 이사장은 시장이 됨
 -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통괄하고,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함
- 재단의 시설, 운영, 사업에 필요한 자금 재원을 정함(안 제13조)
- 시는 공유재산 중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중소·벤처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7조)
-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유상 관리 전환 또는 무상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9조)
- 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재 부천시에 각종 재단이 너무 많이 설립되어 경영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한 예산, 임원, 직원이 증가되어 인건비 지출이 막대함. 벤처·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비 문제는 용역보고서에 따라 인력은 재단이 활성화되었을 때 증원시키겠습니다. 현재 성남의 경우 13명인데 공무원 3명 파견, 임시직 5명, 직원 5명입니다. 최소한의

다고 설립된 많은 재단의 경영이 잘되는 사례가 별로 없음

- 공단, 재단 설립에 예산지원이 많은데 잘 되는 것 없이 적자 경영으로 성공한 것이 없는데?
- 시에서 출연할 계획인가?
- 꼭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는지?
- 30억 5년 동안 150억인데 협약되었는지?
- 8억을 미리 받았다는 근거는 있는지?
- 산자부 기금 시에서 출연할 생각인지, 근거는?

인원으로 운영 필요시 인원 확충 계획입니다. 성남은 중기업, 시·도 지침에 따라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도, 중앙에서 출연하였습니다.

- 만화정보센터는 나름대로 성공,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으며 PCN은 주식매각에 성공하면 대외 신인도도 높아 적자에서 회복될 것입니다.
-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할 계획입니다.
- 자체는 기술연구용역 단체가 아니므로 직접 교부할 수 없음
- 네, 매년 협약합니다.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입니다.
- 전자부품연구원(203동)에서 받았습니다. 협약 당시 조건부(재단설립)로
- 20억 출연하려고 합니다. 계속 출연할 필요는 없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6. 수정안요지

- 별첨

7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의안번호	제545호
의결년월일	2002. 3. 20 (제94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3. 19

제출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임원 중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함
-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하도록 함
- 사업계획서 등 제출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
- 결산서의 제출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
- 보고 및 검사를 시장 및 의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골자

- 임원 중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제3항)
-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도록 함(안 제7조제5항)
- 사업계획서 등 제출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15조)
- 결산서 제출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(안 제6조)
- 보고 및 검사는 시장 및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)

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5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⑤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.

제15조 중 “승인을 얻어야 한다.”를 “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시장에게”를 “시장 및 의회에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시장은”을 “시장 및 의회는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>제7조(임원) ①(생략) ②(생략) ③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7조(임원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.</p>

<p>④(생략)</p> <p>⑤(신설)</p> <p>제15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재단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제16조(결산서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 말 까지 <u>시장에게</u>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20조(보고 및 검사) <u>시장은</u>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④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</u>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.</p> <p>제15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</p> <p>..... <u>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.....</p> <p>제16조(결산서의 제출)</p> <p>.....</p> <p>..... <u>시장 및 의회에</u></p> <p>제20조(보고 및 검사) <u>시장 및 의회는</u></p>
---	---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선도산업 육성개발 및 중소·벤처기업 진흥육성을 위한 부천산업진흥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중소·벤처기업”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가 부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중소·벤처기업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법인격)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.

제5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산업기술단지 개발·관리 및 지원
 2.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
 3. 인력·자금·기술·마케팅 및 교육 지원
 4. 중소기업 국제협력 촉진
 5.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·관리
 6. 벤처창업보육센터의 설치·운영 등 창업보육에 관한 지원
 7.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
 8. 공적지원기능 간 네트워크 구축
 9.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위탁하는 사업

10.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6조(정관)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
5.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7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8. 기금에 관한 사항
9. 공고에 관한 사항
10. 사업에 관한 사항

1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7조(임원) ①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.

②이사장은 시장이 된다.

③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.

④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⑤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.

제8조(이사회) ①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괄하며, 이사장 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③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대표이사와 감사) ①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, 재단의 업무를 통괄한다.

②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0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.

제11조(기금)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.

제12조(출연금) ①시는 재단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·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중앙정부의 지원금
2. 시와 도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
3.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
4.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, 위탁사업 수익금, 재단의 사업 수익금

5. 기타수입

제14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

제15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16조(결산서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시설물의 관리위탁) ①시장은 공유재산 중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재단은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.

제18조(업무의 위탁) ①시장은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협약에 의한다.

제19조(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)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.

제20조(보고 및 검사) 시장 및 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21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22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